

大學財政과 稅制 지원

李 弼 佑

(建國大 經濟學科)

1. 머리말

大學은 人類歷史에서 국가와 社會發展의 기틀로서 역할해 왔다. 教育投資가 국가의 百年之大計이거늘 국력의 발전은 바로 教育과 函數 관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왜지 열 마리를 키우느니보다는 훌륭한 人間을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것이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 훨씬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음은 歷史의 敎訓이기도 하다.

그간에 이룩된 우리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우리나라 學父母들의 높은 子女 教育熱의 열매이기도 하다. 教育은 사실상 個人的 利益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크게는 國益에 직결되므로 그 公共性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私的財라기보다는 일종의 公共財 또는 準公共財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教育 사업은 개인의 손에 의해서보다도 국가가 도맡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관습과 制度에 있어 나라마다 그 특성이 다르므로 유럽에서처럼 初等 教育에서 高等 教育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부가 담당하는 나라들도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私學이 주가 되면서 政府財源에 의해 관리되는 官立大學이 함께 병존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私學과 官學이 混在된 체도를 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에 있어서 전체 大學은

용을 볼 때, 정부보다는 個人的 財力에 의해 설립·운용되고 있는 私學이 절대적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公共性이 강한 高等教育이 個人的 손에 맡겨질 때, 그리고 초기 私學財團의 資本蓄積이나 財源基盤이 미약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의 大學財政은 항상 不安定한 여건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 學父母의 向學熱은 世界的으로 높은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中學校 義務教育制도 실현하지 못한 教育制度의 낙후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와 비슷한 臺灣은 이미 1969년부터 中學校 義務教育制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21세기 정보와 社會의 실현을 눈 앞에 두고 과연 우리의 현재 大學教育 實情이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인지? 公共性 價値가 높다고 인정되는 大學教育은 대부분 民間의 손에 맡겨져 그로 인한 市場失敗의인 事例는 허다하다. 전국 大學의 수 120개 중 79개의 大學이 私學이며 최근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私立大學의 부채는 1,594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私學의 財政은 危機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大學의 연구, 실험·실습 시설, 도서, 교수 충원, 강의실, 세미나실, 교욱 기자재, 기타 북

지 시설 등 우리의 大學이 先進國에 발돋움할 수 있는 與件은 아직도 요원한 것임을 감안할 때, 大學의 財政擴充을 위한 對策은 國家의인 次元에서 접근되어야 할 時急한 정책 과제인 것이다. 本稿에서는 大學財政의 擴充 문제를 주로 稅制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大學財政의 脆弱性

우선 稅制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 大學財政의 現況을 살펴 보고 그 財政的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代案들을 찾아 보며 그에 부응하는 稅制 支援手段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大學이 그 質的인 면에서 世界 有數 大學에 비해 落後되어 있음은 재반 교육 여건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즉, 1989년에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경우 교수 1인당 學生數는 39.4명인 데 비해 東京大學은 9명, 옥스포드大學은 9.6명, 독일 하겐大學은 11.1명, 미국 일리노이大學은 12.9명이었다. 學生 1인당 도서 수는 서울대가 48권인 데 비해 東京大學은 296권, 옥스포드大學은 593권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학생 1인당 公教育費를 보면, 서울대를 1로 보았을 때 東京大學은 10.1, 미네소타大學은 6.5, 옥스포드大學은 4.9로서 역시 우리나라 教育의 實相은 그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겠다.

私立大學 운용을 위한 收入財源의 조달 상황을 보면, 주로 學父母가 부담하는 납입금이 그

大宗을 이루고 있다. 사립대학의 財政收入源은 學生들의 納入金, 財團의 轉入金, 外部로부터의 기부금, 국고 보조 및 기타 용역 收入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1989년의 私立大學 총 운영 수입은 1조 1,744억 원이었는데 이중 납입금 수입이 8,918억 원으로서 약 75.94%를 차지하였다.

재단의 收益事業을 통한 學校轉入金은 1987년에 16.9%를 차지함으로써 미약한 것이었다. 私立大學에 대한 國庫支援은 운용 수입에서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 때 우리나라 私立大學의 財源 構造上的 특성은 말할 것도 없이 學生들의 등록금이 위주가 되는 受益者負擔原則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納入金 위주의 우리나라 私學財政에 비해 先進 諸國의 경우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미국의 경우 私立大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총 수입의 18.4%이며 학생의 납입금 수입은 38.7%에 불과하다.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고의 지원은 22.4%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財團으로부터의 轉入金 收入 비중은 프린스턴大學의 경우 27%, 하버드大學의 경우 24%를 차지하고 있다.

外國 私立大學들이 정부로부터 支援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은 역시 大學教育이 비록 私學으로 운용된다 하더라도 그 教育의 열매가 社會 全體의 발전에 환원된다는 公益性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는 데 그 근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大學은 1989년 현재 총 104개이며 그중 81개가 私立大學으로서 學生數

〈표 1〉 사립대학 운영 수입 현황

(단위: 천 원, %)

구	분	'89(결산)		'90(예산)	
		금	비율	금	비율
납입	금	891,853,127	75.94	1,019,647,482	74.88
수수료	수입	27,042,788	2.30	25,665,034	1.88
전입기부	금	199,060,722	16.95	259,171,706	19.08
기본재산	수입	1,735,462	0.15	2,018,943	0.15
교육연구	수입	7,408,794	0.63	7,358,498	0.54
기타	수입	52,296,018	4.45	47,848,263	3.51
계		1,174,396,911	100.0	1,361,709,926	100.0

*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90.

에 있어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私立大學의 정부 지원은 1989년 文教部 大學教育豫算(7,245억 원)에서 불과 6.9%(5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公共性을 지닌 私立大學이 國立大學에 비해 國家 資源配分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3. 大學財政 擴充手段의 開發

오늘날 大學의 낙후성을 초래한 그 주된 원인이 財政의 脆弱性에 있다고 한다면, 21세기를 향한 大學 位相의 재정립은 바로 財政難의 克服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현 與件에서 가능한 大學財政의 擴充手段을 모색하고 새로운 財源手段을 개발해야 한다.

大學財政의 擴充手段은 크게 나누어 政府支援과 民間支援 두 분야로 區分할 수 있다.

첫째, 私立大學을 위한 政府의 국고 보조금을 대폭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1년까지 매년 약 6,450억 원이 大學財政 擴充을 위해 조달될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약 절반인 3,300억 원은 매년 정부가 國庫補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追加財源의 조성은 결국 租稅收入으로 조달·할애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에 教育財政 조달을 위한 教育稅 등 제반 稅制의 개편이 요구된다.

둘째, 大學의 自體의인 努力에 의한 財源調達方法을 모색·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大學 자체의 財源手段은 學生의 納入金, 法人出捐金, 學校法人 收益事業에 의한 轉入金, 기타 研究用役에 의한 收入, 시설 대여 수입, 동창회 기부금 등 다양한 財源 조달 수단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納入金の 引上은 學父母의 부담 증대 및 최근 등록금 인상에 대한 學生들의 저항 등으로 그 限界가 있다 하겠다. 연구 용역 수입 지원이나 동창회 기부금 지원도 현실정에서 長期的으로 크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大學財政의 재원 조달을 長期的·安定的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천은 역시 學校法人의 收益事業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收益事業體를 갖추지 못한 大學도 많지

만, 또 있다 하더라도 명색뿐이지 실제 大學財政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大學의 自救的인 財政擴充手段은 역시 현재 活性化되지 않고 있는 學校法人의 收益事業이며, 여기에 정부의 稅制支援이 각별히 配慮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大學 外部로부터의 財政支援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기업이나 독지가의 大學에 대한 조건 없는 기부금을 들 수 있다. 최근 재벌급 기업들이 國立大學에만 집중 지원하고 私立大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기업 이익의 社會還元이라는 觀點에서 國立大學과 私立大學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寄與金 入學制를 생각할 수 있다. 限時的으로 적용한다면 현실적으로 大學財政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社會的 正義나 教育機會의 均等 면에서 得보다 失이 더 큰 것으로 비춰되고 있어 쉽게 수용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大學의 優劣에 따라 그 혜택도 달라질 것이므로 大學 간의 財政的 不均衡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大學財政 擴充手段 開發戰略은 첫째, 새로운 稅源開發을 바탕으로 하는 稅制 개편으로 교육 제정의 추가 예산을 마련하여 大學에 補助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大學 스스로의 自救的 努力의 일환으로 收益事業의 活性化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稅制의 배려가 學校法人事業에 대해 적극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教育關聯稅制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우선 內國稅에 관련한 교육 제정의 문제를 살펴 보면, 정부는 教育財政 조달을 위해 內國稅의 11.8%의 法定交付金を 地方教育團體에 配分해 주고 있다. 內國稅에 연계되는 交付金은 稅收 사정이 악화될 때 자연 줄게 됨으로써 教育財政은 제도적으로 사실상 不安定한 면을 지니고 있다. 內國稅收의 증대는 그만큼 教育財政을 확충시킬 것이므로 所得課稅, 財產課稅 등 지급

까지 과세가 미흡했던 稅日의 강화로 교육 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稅收은 지난 5년 간에 걸쳐 계속 잉여금을 실현하고 있으며 올해의 세계 잉여는 3兆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예로서 10%를 반드시 다음해 豫算에서 文教豫算으로 配定할 것을 制度化하는 것도 效果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올해에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교육 제정에 유입될 것이며 이 액수는 교육 제정 투입액 중 대학 제정 국고 보조 소요액에 일치함으로써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계 잉여가 해마다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永久的인 效果는 없는 것이지만,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一時的이나마 그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과세가 미흡했던 不動産 분야의 課稅는 富益富 貧益貧 稅制를 是正한다는 취지에서도 社會的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再分配的 效果와 아울러 大學教育 財政의 擴充效果라는 一石二鳥의 得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유보되었던 金融實名制의 도입, 綜土稅의 경우 財產課稅의 조기 現實化, 企業의 業務用 및 非業務用 구분의 폐지 등 改革의인 稅制改編으로 租稅正義의 구현과 함께 內國稅收 확보로 교육 제정 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內國稅에 연계된 法定交付金 제도만으로는 현실의 教育財政 조달은 항상 부족했었다. 따라서 정부는 1982년에 5년 時限으로 教育稅를 新設 운용해 오고 있다. 이것은 '87년에 다시 5년을 연장하여 '91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했다가 올해 永久稅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課稅方式에 대해서는 아직 代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國稅로 부과하여 중앙 정부가 文教部를 통해 지방 교육 기관에 대해 配分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地方稅化함으로써 自治團體에 일임시킬 것인가의 代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地方自治가 시행될 것이고 教育은 地方公共財로서 자치 단체에서 공급되는 것이라면 教育稅는 地方稅化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실상 稅源이 빈약한 대부분의 地方自治團體에서 소요되는 教育財源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그렇게 될 때 教育財政은 地域間에 상당한 不均等이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教育稅의 地方化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다. 中央에서 地方의 財政力을 고려해서 國稅로 징수하여 平等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 오히려 合理的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現行 教育稅의 과세 방식은 利子配當 소득, 酒稅, 金融 및 保險收益에 대한 稅金에 附加되는 形式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教育稅 과세 대상은 앞으로 擴大 적용함으로써 教育財政 擴充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로서 綜土稅의 一定水準 이상에 대해 教育稅를 부과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土地超過利得稅에는 물론 앞으로의 課稅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치성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수영장 등) 등에도 教育稅의 과세는 바람직한 것으로 건의한다.

사실상 담배 消費稅가 地方稅로 이양되기 전에는 담배 판매 수익에 教育稅가 부과되었으나, 그것이 地方稅化된 후에 없어졌다. 地方教育稅가 新設된다면 이것은 다시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財產課稅의 강화, 教育稅의 새로운 稅源開發 및 그 改編을 통해 향후 大學財政에 대한 國庫補助의 첫 단계로 최소한 私立大學 財政의 10%水準을 메꾸어 줄 수 있도록 건의한다.

5. 私學法人 關聯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첫째, 앞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財源 조성은 學校 밖으로부터의 民間支援이라고 생각한다. 企業 및 목지가로부터의 寄附金 또는 贈與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2大 輸出國으로 부상하였건만, 財閥級 企業들의 社會還元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財閥들의 大學支援은 주로 國·公立大學에 집중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私立大學은 設立校主가 있으며, 또한 學校法人이 운용하

는 收益事業體는 비록 그것이 非營利的이라 하더라도 營利法人과 競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企業은 私學에 대한 財政支援을 당초에 꺼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私學에 대한 企業의 지원을 보면, 대부분 실질적으로 設立校主가 없는 宗教 단체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圖書館을 지어 주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향후 企業의 私立大學에 대한 財政支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國立大學 지원의 경우에 비해 보다 有利한 稅制의 配應가 있어야 할 것이다.

現行 私立大學에 대한 企業의 寄附金은 一定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寄附金은 당해 法人의 所得金額의 10%와 當該法人 資本金의 2% 합산 한도 내에서 損費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非營利法人의 기부금 손비 처리를 소득 금액의 25%까지 허용하고 있다. 美國은 50%까지 손비 처리해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기부금 稅法 규정은 좀 인색한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向後 기업의 私學財政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손비 처리 規定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個人이 學校事業에 出捐하는 資産에 대해 贈與稅를 非課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學校法人에 대한 寄附金은 稅法上 全額損費處理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결함임이라고 한다면, 限度를 초과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 5년간 이월하여 損金算入하는 方案도 效果的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私學의 自救的인 財源 확보 手段의 동원을 자극하고 유발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稅制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다. 私立大學의 自體 財源 조달은 收益用 基本財產의 크기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私學設立法에 보면 2만 명의 學生을 수용하는 大學의 設立에 있어 그 資本金은 약 40억 원 정도로 되어 있다. 즉, 基本財產의 最低 기준액은 學生 1인당 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낮은 水準이며, 私學의 財源調適能力을 왜소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收益能力의 기반이 되는 基本財產의 확보 기준을 上向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私學法人의 보유 財產은 임야, 전답, 대지 등 收益이 별로 없는 것이 大宗을 이루고 있어 학교 제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69개 私立大學法人 중 42개 大學法人은 그나마 基準財產에도 미달하고 있어 收益用財產의 영세성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低收益性財產을 매각하고 收益性이 높은 財產을 확보하는 경우 法人稅 부가세의 免除 등 稅制 면에서의 경감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大學의 自救的 努力은 무엇보다도 學校法人 收益事業의 이득을 學校 예산으로 轉入하는 일이다. 現行法에서는 收益用財產에서 발생하는 收益의 80%를 학교 운영 경비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은 현실과는 괴리되는 규정인 것 같다(학교 경영 재산 기준령 제5조 및 시행 규칙). 收益事業體의 시설 확장을 위한 內部 유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轉入金 비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一定比率를 초과하는 轉入金을 실현하는 경우에 全額損費處理는 물론 稅額控除를 추가로 設置함으로써 轉入 行동을 유치할 수 있도록 稅制上的 유인 조치를 강구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90년 稅法改正案은 現行 稅法上年 목표 8,000만 원 이상에 대해 營利法人은 30%, 非營利法人은 27%로 과세하여 私學法人에 대해 低稅率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課稅中立性'이라는 취지에서 35%로 일괄 과세하도록 하였다. 원래 非營利法人에 대한 稅率의 差等 적용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稅負擔의 不公平과 配分の 歪曲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課稅는 하되, 稅率만을 낮게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私學財政이 厚生經濟學의 論據를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열악한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私學法人에 대한 稅制의 차별적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 가지 예로서 現行 附價稅法에서 免稅規定(동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은 '宗教,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用役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역시 公益性이 높은 學校法人의 교육 및 연구 목적상 생산·공급하는 財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향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學校法人이 부담하고 있는 稅金 총액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부가 稅額 면세 조치는 收益事業運營의 活性化에 肯定的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다섯째, 學校法人 收益事業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事業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法人이 확보해 놓은 土地가 녹지에 묶여 실제 사업용으로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정부 청사 건물의 건설을 위해서 녹지의 규제를 해제하면서 私學法人의 수익 사업을 위한 녹지 해제만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느낌이다. 따라서 私學法人의 收益事業을 위한 녹지 규제 완화는 私學財政擴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視角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섯째, 私學法人의 收益事業擴張을 위한 金融貸出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私學法人의 納稅實績이 기준에 未達함으로써 金融 면에서의 支援도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私學의 收益事業이 부진하다 보니 납세액도 크지 못하며 거기에 學校轉入金으로 인해 稅額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私學財政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私學法人에 대한 融資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일곱째, 私學法人에 대한 當局의 稅務調査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稅務調査는 納稅者의 申告額이 基準 미달인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私學法人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收益事業의 영세성, 學校轉入金 등으로 말미암아 算出稅額은 다른 營利法人에 비해 미미할 수밖에 없는 經營上의 특성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私學法人에 대한 稅務行政은 그러한 私學法人만이 지니는 財政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특수성의 稅政上 反映

내지 配慮는 오늘날 危機에 처한 私學의 財政的 基礎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변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오늘날 私立大學의 財政 문제는 하나의 社會問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社會的·國家的 次元에서 對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私學財政에 대한 國庫支援를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 財産課稅의 강화 등 再分配의 稅制의 改革으로 教育財政을 보강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한편, 教育稅의 과세 대상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收益事業體에 대한 부가세 면세 등 稅制 면에서의 배려로 私學法人의 事業 의욕을 고취하여 轉入金 원천 기반을 安定的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부금 全額 손비 처리 규정의 도입으로 外部로부터의 資金迎入 조치를 강화하여 國立大學에의 支援 편중을 私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私學의 40% 정도가 稅金을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私立大學의 法人은 대부분 納稅者이다. 따라서 그 額數가 적더라도 稅制 면에서의 配慮는 이들 사업체의 收益 사업 활동에 의욕을 불어 넣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私學財政의 再建은 私學 스스로의 自敎의 努力과 意志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自助精神이 결여된 상황에서의 외부 지원은 無用之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自敎의 努力의 지표를 정하고(예로서 學校轉入金, 교수 충원 등), 그에 연계된 稅制支援과 배려가 뒤따를 때 더욱 效果的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私學의 財政支援 문제는 大學教育의 公益性和 社會性을 인식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의 政策課題이며 이에 있어 우리는 稅制 면에서 私學法人에 대해 인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 *